

외국인의 서울시립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외국인의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또는 해당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가 서울시립 장사시설 이용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와 차등 없이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법 상의 거소등록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무자력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21일 ‘서울시 이주민 인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포럼 개최 시, 서울시 관내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미등록 이주민이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서울특별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무려 10배가 넘는 화장비를 지불해야만 했다는 사례를 접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2항에 따르면 ‘시장은...(중략)...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1]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표’에는

* 참고(1) : 위 표의 서울특별시민에는 시립화장시설, 시립봉안시설, 시립자연장지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포함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위 장사시설이 설치된 관할 행정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1항에는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법’ 상의 거소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조(용어의 정의) 1호에서는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체류자격의 종류나 유무를 특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서는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법 상의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또는 미등록 외국인 등의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해당 장사시설이 설치된 관할 행정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했더라도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으로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3조의 단서에 의하면 이렇게 외국인과 동포 등에게 차등을 두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시립시설 이용 요금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여 이들을 다르게 대우하여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하였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해당 장사시설이 설치된 관할 행정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이나 외국국적 동포라면 시립 장사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한편, 서울특별시 또는 해당 장사시설이 설치된 관할 행정구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였으나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법 상 거소등록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무자력 외국인의 경우, 장례절차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임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감면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는 글로벌 시티로서 다양한 이주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껴안는 유연한 모습을 여러 방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티의 품격은 이주민을 배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차등을 해소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방법을 모색한다면 서울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립 시설이나 행정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도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차등으로 인하여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고 더욱 유의함으로써 모범적 포용도시 서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의거 서울시장에게 다양한 각도로 이 사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주민등록법

2018년 10월 31 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고양시, 괴주시 주민 포함)인 경우 서울특별시민 사용요금으로 한다.
-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금(신용카드 등 포함)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